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2. 6. 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2. 6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에 근거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및 「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회의록 배부 및 공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회의록 배부 및 공개 규정 정비(안 제52조제1항 및 제5항)
-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시(안 제88조제5항)
 - *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부칠 수 있다는 규정 삭제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(안 제94조~제103조)
 - * 「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에 명시된 부분 삭제
- 「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정 관련 규정 신설(안 제104조~제106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, 제66조, 제99조
 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, 제12조, 제13조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3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득표가”를 “득표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각항”을 “각 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집회후”를 “집회 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개의시”를 “개의 시”로,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”을 “법 제7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단서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동의자의”를 “동의자 외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단서 중 “본회의의”를 “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”로 한다.

제27조 전단 중 “2이상”을 “2 이상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단서 중 “또는,”을 “또는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(의제외 발언의 금지)”를 “(의제 외 발언의 금지)”로 한다.

제37조의2제1항 중 “이하”5분자유발언”을 “이하 ”5분자유발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발언자수”를 “발언 의원 수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단서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4조”를 “법 제74조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표결수, 기명투표·기립표결의 투표의원 및 찬성·반대·기권의원의 성명

제52조제1항 중 “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”를 “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.”로 한다.

제52조제3항 중 “다른곳”을 “다른 곳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8조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9조제1항 중 “있는”을 “있을”로 한다.

제71조제2항 중 “종합심사케한”을 “종합심사하게 한”으로 한다.

제77조제4항 중 “있는”을 “있는”으로 한다.

제7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피심의원”을 각각 “심사대상 의원”으로 한다.

제85조제1항제2호 중 “주기가”를 “술기운이”로 한다.

제88조제3항 본문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89조제1항 전단 중 “동조”를 “같은 조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동조”를 “같은 조”로 한다.

제10장(제94조부터 제103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제94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)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95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한다)은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자문위원은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·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.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

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)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자문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지명이 어려운 경우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7조(자문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

야 한다.

제98조(회의)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.

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④ 제97조에 따라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자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
⑤ 자문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제99조(간사)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0조(의견청취 등)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구미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1조(의견제출) ①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

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102조(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)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3조(자문료 등 지급)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장(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장 주민조례청구

제104조(주민조례청구인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회의규칙을 따른다.

제105조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06조(주민조례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) ① 위원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

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본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
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3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생략)		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제1항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		② ---- 득표자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③ (생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.		④ ----- ----- ----- 각 항 ----- -----.		

⑤・⑥ (생 략) 제12조(회기) ① (생 략) ②의회의 회기는 <u>집회후</u>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. ③・④ (생 략) 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 략)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<u>개회시</u>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 (생 략) 제15조(휴회) ① (생 략) ②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<u>1이상</u>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. 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<u>1이상</u>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	⑤・⑥ (현행과 같음) 제12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집회 후</u> ----- -----.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개회 시</u>----- ----- <u>법 제72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15조(휴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1 이상</u>----- -----. 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1 이상</u>----- -----
--	---

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

② (생략)

제24조(동의의 의제성립) 이 규칙
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
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의 1인 이
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제26조(의안·동의의 철회) ①의원
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
할 때는 발의자 전원, 동의를 철회
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
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
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
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
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
다.

② (생략)

제27조(변안) 변안동의는 본회의
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
그 의안을 발의 할 때의 찬성자
3분의 2이상의 동의로, 위원회
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
의한다.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
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
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
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
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동의의 의제성립) -----

----- 동의자 외 -----
-----.

제26조(의안·동의의 철회) ① --

-----.
----- 본회의
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변안) -----

--- 2 이상-----

-----.

-----.

제28조(안전심의) ①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,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5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 ① ·

② (생략)

제37조의2(5분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 (이하 "5분자유발언"이라 한다) 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.

제28조(안전심의) ① -----

-----.

----- 또는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의제 외 발언의 금지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제37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-----

---이하 "5분자유발언"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발언 의원 수-----

-----.
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5조(표결방법) ①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	제45조(표결방법) ①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9조(회의록의 작성)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	제49조(회의록의 작성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</u>	11. <u>표결수, 기명투표·기립표결의 투표의원 및 찬성·반대·기권의원의 성명</u>
12. ~ 14. (생략)	12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2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<u>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</u>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	제52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<u>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.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	③ -----

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,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다른곳에 옮겨서 보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(생략)

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제60조(위원회의 의사·의결정족수)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(생략)

제68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제69조(예산안의 의결)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1조(결산의 심사) ① (생략)

---- 다른 곳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60조(위원회의 의사·의결정족수) ① -----
1 이상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8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----

----- 1 이
상-----.

제69조(예산안의 의결) ① ----
----- 있을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1조(결산의 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77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

① ~ ③ (생략)

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.

제78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

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·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85조(방청의 제한) ①다음 각

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

② -----

--- 종합심사하게 한 ---
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7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있는 -----

--.

제78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

심사대상 의원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.
--- 심사대상 의원-----
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5조(방청의 제한) ① -----

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(생략)

2. 주기가 있는 자

3.·4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·

② (생략)

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④ (생략)

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안건으로 바로 부칠수 있다.

제89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술기운이 ---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 1 이상-----

-----.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89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-----

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동조 제5항의 본회의 안건으로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.

②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 같은 조 -----

----- . <후단 삭제>

② -----
----- 같은 조 -----

----- . -----

----- .

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제94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)

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

<신 설>

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95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

① 자문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한다)은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자문위원은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·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.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, 장기여

<신 설>

<신 설>

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
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
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
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
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
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
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
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
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
기간으로 한다.

제9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
장)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
원장(이하 “자문위원장”이라 한
다)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(互
選)한다.

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
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
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
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지명
이 어려울 경우 자문위원 중 연
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7조(자문위원의 제척·회피)

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

<신 설>

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
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
던 경우

2.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
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
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
있던 경우

3.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
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
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용역
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
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
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
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
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
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
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
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
다.

제98조(회의) ① 자문위원회의 회
의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
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거나 자

<신 설>

<신 설>

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.

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④ 제97조에 따라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자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
⑤ 자문위원장은 안전에 따라 부의안전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제99조(간사)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0조(의견청취 등)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

<신 설>

<신 설>

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구미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1조(의견제출) ①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102조(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)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03조(자문료 등 지급)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장 주민조례청구

제104조(주민조례청구인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회의규칙을 따른다.

제105조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

<신 설>

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06조(주민조례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) ① 위원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

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
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
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
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
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
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
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
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
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
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
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
하려는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
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
률」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
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
는 본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을
준용한다. 이 경우 제안자는 청
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99조(징계의 요구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□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이의신청 등)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
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

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(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